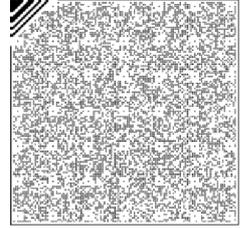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10.24. 보험업법 개정(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에 따라 '24.10.25.*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해서는 '25.10.25.부터 시행
3. 현재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중인 만큼, 요양기관에서는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융위 협조요청사항)
 - * 보험회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8조의5)

- 붙임 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개요 1부.
2.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담당자 연락처(보험개발원)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외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주무관	김태진	행정사무관	김현아	필수의료총괄 전결 2024. 3. 28.
				과장 임혜성

협조자

시행 필수의료총괄과-744 (2024. 3. 2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보건복지부 4층 필수의료총괄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668 팩스번호 044-202-3982 / taejin417@korea.kr / 대한민국 공개